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9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909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4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16. 5. 12.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창원)2013나2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가집행이 붙은 선행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07,403,767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후 상소심에서 선행 판결이 취소되었고, 한편 F이나 M은 피고의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가배당, 배당절차에서 부당이득,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자인 M이 신고한 채권금액을 기초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에서는 M의 채권액이 위 신고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M 등과 공모하여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N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신탁이나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